의안 번호	82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보빈 의원 대표발의)



창 원 시 의 회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보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2

발의연월일 : 2026. 10. 15.

발 의 의 원 : 성보빈・곽은정・구점득・권순재・김동엽
김수민・김인애・남재욱・남호준・류성국
박연정・박영주・백승규・변보미・심임숙
이원주・이정희・전태완・정은미・지상록
황점복 의원(21명)

1. 제안이유

재난대응 등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무원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의복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사기 진작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속공무원의 의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제7호)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관계 법령

다. 현행 조례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속공무원의 재난대응이나 현장활동 등에 필요한 의복의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 6. (생 략) <신 설> 7. (생 략)	제4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 1. ~ 6. (현행과 같음) 7. 소속공무원의 재난대응이나 현장활동 등에 필요한 의복의 지원 8. (현행 제7호와 같음)

참고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참고 **현행 조례**

■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와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소속공무원”이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4. 직위해제 중인 공무원

③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른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 조례에서 정한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 등 지원
2. 사기진작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문화탐방 등 지원
3. 직장동호회 활동비 지원 및 생일 축하 선물 제공
4.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 격려품 제공
5. 삭제
6. 소속공무원, 청원경찰, 공중보건의사 및 공무직의 6세 미만 미취학 자녀 보육료 지원
7.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2(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따라 복지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후생복지지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구내식당, 매점,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2.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휴양시설(콘도)제공

제6조(후생복지 운영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후생복지 담당국장,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2.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의회 의원
3. 학계, 지역경제,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청할 때
2.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이 업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 회의 등) ① 협의회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협의회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삭제 <2025. 9. 30.>

제15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사업 및 후생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을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삭제 <2025. 9. 30.>

제17조삭제 <2025. 9. 30.>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의원 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

□ 발의개요

○ 조 례 명 :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발 의 자 : 성보빈 의원 (산업경제복지위원회)

○ 상정시기 : 제156회 임시회

○ 제안이유 : 근무복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직원 사기 진작

○ 주요내용 : 창원시 소속 공무원 피복 등 복장 지원 근거 신설

조항	내 용
안)제4조제7호	(신설) 소속공무원의 재난대응이나 현장활동 등에 필요한 의복의 지원

□ 주요 검토내용

① 개정취지 및 타당성

○ 재난대응·행사지원 등 **현장업무 수행**을 위한 근무복 **지원 필요성 인정**

○ 시와 노조 간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무복 지원에 관한 사항 명시

▸ 개정조례(안), **단체협약 이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2019년 동일 취지의 야외근무복 지원 선례 有 → **기존 지원사업의 제도화 성격**

[참고1] 단체협약 제54조(근무복 지원 등)

① 시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근무여건에 따라 단체복 예산을 확보하여 보급·지원하도록 노력한다.

② 조합원이 근무복을 착용할 경우 남녀 모두에게 적용하며 소속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참고2] 2019년 야외근무복 지원 (추진부서 : 자치행정과)

- 지급대상 : 공무원(소방, 청경, 공무직 제외) 약 4,000명
- 소요예산 : 354백만원(단가 88,517원 × 4,000명)
- 낙찰자선정('19. 10.) → 직원선호도 조사('19. 10.) → 지급('20.상반기)

② 상위법령 저촉 여부 및 타 조례 중복 여부

구분	검토내용
상위법령 저촉여부	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복리후생) 범위 내로 저촉사항 없음
타 조례 중복여부	동일·유사사업 및 타 조례 중복내용 없음

③ 개정내용 적정성

○ 일부 정비권고 용어 및 중복표현 정비, 내용 명확화 (법무담당관 협의)

현행 조례	개정(안)	검토(안)
제4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 6. (생 략) (신 설) 7. (생 략)	제4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 ---------- ----------. 1. ~ 6. (현행과 같음) 7. 소속 공무원의 재난대응 등 현장활동에 필요한 의복의 지원 8. (현행 7호와 같음)	제4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 ---------- ----------. 1. ~ 6. (현행과 같음) 7. 소속 공무원의 재난대응이나 현장활동 등에 필요한 의복의 지원 (의원발의안과 같음)

④ 타지자체 사례

○ 다수 지자체에서 동일·유사 조례 운영 중

지자체명	지원내용	근거
대전광역시	현장민원, 재난대응 등을 위한 복장 지원	후생복지 조례
서울 강서구	단체 활동을 위한 피복 등의 지원	
서울 성동구	단체 활동을 위한 피복 등의 지원	
대구 군위군	시책 홍보 및 직원 체육행사를 위한 피복 등의 지원	
대구 수성구	직원 체육행사 및 단체활동을 위한 피복 등 지원	
전남 영광군	단체활동 및 행사 지원업무를 위한 피복 등 지원	
충남 공주시	직원 근무복 지원	

⑤ 재정부담

○ **(예산담당관)** 신규 재정수요 발생에 따른 향후 재정부담 증가 우려

- 향후 의무적 · 반복적 재정지출로 확대 가능성 및 소요예산 지속적 증가 가능성 有
- 시 재정여건을 고려, 지원범위 및 기준설정(단가, 주기, 대상 등) 명확화 필요

○ **(인사과)** 기존 지원이력 有, **신규·추가 재정부담 제한적**

- 2019년 기(旣) 지원 이력 있어 완전히 새로운 재정수요 아님
- **일회성 · 일시 지급 성격**, 경상적 지출 확대와는 다른 성격 **(지급주기 7년 이상)**
- 단, 일반 의복 지원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단체복 지급기준 별도 방침 설정 필요**

[참고3] 비용추계 (5개년)

- 수혜대상 : 창원시 소속 공무원 약 4,800여 명
- 구입단가 : 120천원
- 지원주기 : 비정기 지원 (단발성사업)
  * 근무복 사용기간과 기존 지급사례 등을 고려, 통상 5년 이상으로 예상
- 총 소요비용 576,000천원 (5개년 합계)
- 산출내역 : 4,800명 × 120천원 = 576,000천원

(단위: 천원)

1차년도 (2027년)	2차년도 (2028년)	3차년도 (2029년)	4차년도 (2030년)	5차년도 (2031년)	합계
576,000	-	-	-	-	576,000

□ 종합 검토의견

[개정안 수용] 조례 개정 취지 타당, 수용 추진 (용어 일부 정비)

➡ 단, 재정부담 확대 차단을 위해 지급대상, 주기에 대한 별도 집행 방침 수립 전제 추진

(**재난대응 등 현장근무 취지에 맞는 근무복** 지원, **일반의복 확대지급 금지** 원칙 수립)

붙임 1.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원안) 1부.
2. 비용추계서 1부. 끝.

참고 1 타지자체 조례

지자체명	조례명	내용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3. 소속 공무원의 현장민원, 재난대응 등 업무 편의를 위한 **피복 등 복장 지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4. 단체 능력개발의 지원, 단체 활동을 위한 **피복 등의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자판기, 커피전문점 등) 운영수익금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3. 단체 활동을 위한 단체 능력개발비 및 **피복 등의 지원**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1. 군 시책사업 홍보 및 공무원 체육행사를 위한 **피복 등의 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5. 직원 체육행사 및 단체 활동을 위한 **피복 등 지원**
전라남도 영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4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9. 단체 활동 및 행사 지원업무를 위한 **피복 등 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4. **직원 근무복** 지급

참고 2 우리 시 직종 · 업무별 근무복 지원 관련 규정 등

관련규정		지급대상
市조례	•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23조	단원
	• 「창원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안전관리요원
	• 「창원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해설사
	•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의용소방대
	• 「창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자율방재단
	• 「창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자율방범대
	• 「창원시 환경미화원 고용 및 복무 규칙」 제13조	환경미화원
	• 「창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보행안전도우미
상위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	주정차 단속공무원
	•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사회복무요원
	• 「소방공무원복제규칙」 제2조 및 제3조	소방공무원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	청원경찰
	•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14조	산불감시원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민방위 대원 등
예산지침	•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편성목·통계목별) 인건비 | 기간제근로자 피복비 일반운영비 | 공무원, 청원경찰, 현업부서 공무직 피복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 공사감독 피복비	공무원,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등
단체협약	• 「2023년 단체협약」 제54조(근무복 지원 등) ① 시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근무여건에 따라 단체복 예산을 확보하여 보급·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소속 공무원

붙임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4조제7호(신설)

나. 비용발생요인

○ 소속 공무원 근무복 지원근거 신설에 따른 근무복 제작·구입비용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수혜대상 : 창원시 소속 공무원 약 4,800여 명

○ 구입단가 : 120천원

○ 지원주기 : 비정기 지원 (단발성사업)

- 근무복 사용기간과 기존 지급사례 등을 고려, 통상 5년 이상으로 예상

(단위: 천원)

구분(부기명) \ 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직원 근무복 구입	-	-	-	-	-

나. 추계 결과

○ **총 소요비용 576,000천원(5개년 합계)**

- 산출내역 : 4,800명 × 120천원 = 576,000천원
- 본 사업은 연례 반복사업이 아닌 비정기적 지원사업으로, 비용추계 기간 중 최초 예산편성 예정 연도인 2027년도에 소요비용 전액을 반영함.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7년)	2차년도 (2028년)	3차년도 (2029년)	4차년도 (2030년)	5차년도 (2031년)	합계
직원 근무복 구입	576,000	-	-	-	-	576,000

다. 재원조달방안: 시비

3. 작성자 : 자치행정국 인사과장 배기철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7년)	2차년도 (2028년)	3차년도 (2029년)	4차년도 (2030년)	5차년도 (2031년)	계
세 출		**576,000**	**-**	**-**	**-**	**-**	**576,000**
직원 근무복 구입		576,000	-	-	-	-	-
재원 조달		**576,000**	**-**	**-**	**-**	**-**	**576,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도비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576,000	-	-	-	-	576,000
	지방세	576,000	-	-	-	-	576,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붙 임 **검토의견 조회안**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보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6. . .

발 의 의 원 : 성보빈 의원

찬 성 의 원 :

1. 제안이유

재난대응 등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무원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의복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사기 진작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속공무원의 복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제7호)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관계 법령

다. 현행 조례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속공무원의 재난대응 등 현장활동에 필요한 의복의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 6. (생 략) <신 설> 7. (생 략)	제4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 1. ~ 6. (현행과 같음) 7. 소속공무원의 재난대응 등 현장활동에 필요한 의복의 지원 8. (현행 제7호와 같음)